

특별대사면 시행

□ 추진 목적

- 노사화합 실현 및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도전적·적극적 업무 분위기 조성

□ 세부 내용

○ 사면 대상

- 미말소자 157명(14년 1분기까지 징계처분 직원) 중 심의를 통해 142명 확정
 - ※ 심의 기준 : 처분 사유(업무추진상 불가피성 여부), 개전의 정 유무

○ 사면 효과

- 사면 적용일 이후 승진/평가 등 인사 불이익 해제
- 인사기록카드/경력증명서 발급시 사면된 징계처분 기록 미기재
 - ※ 이미 경과된 징계처분 효력은 소급불가
 - ※ 사면된 징계처분이 표창 등 공적으로 감경된 경우 해당 공적의 이중참작 금지

□ 시행일 : '14.6.16

- 개별 공지(e-mail) : KBN 방송 직후